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181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8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0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, '채무자'는 '피고'라 한다)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오승이

별지